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

사 업 방 법 서

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무배당수호천사 NEW 실속하나로암보험	실속형	
	보장체증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실속형	10 년만기	전기납	만 15 세~70 세
	20 년만기	10·15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30 년만기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80 세만기 -	1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15 년납	만 15 세~65 세
		20 년납	만 15 세~60 세
		30 년납	만 15 세~50 세
	90 세만기 -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30 년납	만 15 세~60 세
	100 세만기	10·15·20·3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보장체증형	20 년만기	10·15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30 년만기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80 세만기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60 세
		30 년납	만 15 세~50 세
	90 세만기	10·15·2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30 년납	만 15 세~60 세
	100 세만기	10·15·20·30 년납, 전기납	만 15 세~70 세

나.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하지 않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분까지 가능하며,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나. 회사가 '가'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 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13. 기타

가. 상품명칭 운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나.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 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